

	교원양성위원회 규정		문서번호	5-1-8	
			제정일	2010. 03. 01.	
			개정일	2022. 02. 18.	
			페이지	1/2	관리 부서 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원자격 검정 및 교원양성에 관한 사항
2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을 충족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,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본 대학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의 세부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학 전임교수로 한다.

④ 비당연직 위원은 외부인사 1명으로 하며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위촉한다.

제4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실무위원회) 본 대학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련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8조(관계부서와의 협조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	교원양성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8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교무처

제9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교명과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